

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·운반및 재활용촉진율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2. 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2월 1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2월 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2. 8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안이유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
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음식
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2007. 1. 1.부터 시·군·구의
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을 식품위생법
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
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함 (안 제2조제2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